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!
 -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 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임만균 의원입니다.
 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현행 「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난 2013년 제정・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.
- 반면 근거 법령인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은 시·도지사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·도 지 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도록 하 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.

- 이에 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추가하고,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자치법 규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데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 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